

1999. 12. 23

제91회 정기회

검 토 보 고 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자 : 전문위원 장재영)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우리 구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을 광주 지역 소재 법원에 제기하지 않고 서울 등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조직법에 의거 재판관할이 서울소재 법원이 됨에 따라,
- 서울지역 소재 변호사중에서 1인을 추가로 우리 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서울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사건은 서울 현지 고문변호사가 수임토록 하여 소송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제2조(위촉) 중 “선임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3인의 고문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송사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지역 외 변호사를 위촉할 수도 있다.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이 법원조직법에 의거 광주지역 외의 타 지역 소재법원에 제기됨에 따라, 현지 변호사 1인을 추가로 우리 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소송사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선임에 지역제한을 가하여 광주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인원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논의된 사항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고문변호사의 선임과 관련된 지역제한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는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등 서구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나,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하여 우리 구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이 광주지역 외에 타 지역 소재의 관할법원에 제기됨에 따라, 현행조례 하에서 위촉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이러한 소송사건을 수임토록 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소송사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변호사를 위촉토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송업무의 수행에 탄력성·신축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의 선임에 지역제한을 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지역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둘째, 고문변호사의 적정인원 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조례 제2조에서는 의회와 구청에서 선임한 2인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구청에서 선임하는 변호사 1인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적정 인원수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직무(제4조)와 관련 그 동안의 운영실태와 실적(소송사

건의 경우 '97년 19건, '98년 10건, '99년 8건임)등을 고려하여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이번 개정 요구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조례 제3조와 제4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임과 위촉의 자구 용법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의 제1항의 “구의회에서 선임하는” 제2항의 “구청에서 선임하는” “구청장이 선임한다” 제4조의 “구의회 및 구청에서 선임하는”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임이란 일반적으로 소속이 동일한 기관구성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예 : 공무원 관계 등 관직에 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위촉이란 소속이 동일한 기관 구성원이 아닌 외부의 다른 전문가 등에게 특정업무를 맡기는 행위이라는 점에서 선임이라는 용어보다는 선정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